

경호산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조 한 봉*

◇ 목 차 ◇

-
- I. 서 론
 - II. 경호산업의 현황과 경호직원의 특성
 - III. 경호산업의 재해 실태
 - IV. 경호산업의 재해예방 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

I. 序 論

지금 우리는 IMF체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인하여 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OECD의 요청에 따른 시장개방상황에 직면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경호/경비업'에 대한 재해예방 측면의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실태조차 종합적으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외국 첨단경호업체에 비하여 자생력이 약한 한국경호산업의 전문화와 평생직장화, 직업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대통령경호실 경호과장.

경호는 기본적으로 심신이 건강한 경호직 근무자에 의하여 성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경호산업은 조직의 구성원인 근무자들의 재해예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경호 업체/기관들이 인적 재해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제대로 보호받기가 힘들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연구자가 1997년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문조사한 바 있는 자료¹⁾를 토대로 국내 경호산업 종사자의 근무상태와 재해실태를 요약하고, 이를 기초로 경호산업의 재해예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재해설문시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非公式的인 人的 災害'(예 : 교통사고, 인대손상, 훈련중 부상 등)도 '업무시간중' 혹은 '직무관련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4일 이상 가료를 요하는 재해'²⁾일 경우에는 빠짐없이 답해줄 것 당부하였다. 또한 재해 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무재해의 조건(예 : 재해예방교육, 신규설립 등)과 요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기재해줄 것을 당부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된 '경호산업 재해실태 조사서'의 설문은 노동부 재해통계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의 구분, 상해 부위, 상해 종류, 발생 형태, 요양 기간, 발생시 동시 근무자수 등은 노동부의 설문 유형과 응답 항목을 동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의의는 재해이론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호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재해예방의 방안을 논의한 접근이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의 급변하는 국제경제상황 속에서 국내 경호산업 근무자들이 개인과 조직의 안전실현에 기여하고, 그 자신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삶을 안정적으로 계발해나갈 수 있는 재해예방에 대한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설문조사지가 작성요령에 맞게 응답회수된 공경호 4개 기관(1996년 기준 총 984명의 자료)과 민간경호 98개 업체(1996년 기준 총 7,238명의 자료) 총 102개 경호기관 근무자 8,222명의 자료.

2) 이 재해 기준은 통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일반통계(승인번호11806호)를 법적근거로 총리령 제154(1975년 3월 11일)에 의거 보고양식 44-4호로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산업재해 조사대상임(노동부, 「1995산업재해분석」 <서울: 노동부, 1996>, '산업재해 조사개요').

Ⅱ. 경호산업의 현황과 경호직원의 특성

1. 경호산업의 현황

가. 경호의 개념과 경호기관의 구분

우리의 경호산업을 논의하면서 선진 서구로부터 나온 개념과 방향제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이해된다. 이는 나라마다 산업, 근로문화, 환경, 역사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호’와 ‘경비’ 개념은 용어 사용상 ‘공경호’, ‘민간경비(사경비)’, ‘민간경호경비’, ‘신변보호(호위)’, ‘호송경호’, ‘시설경비(인력경비, 시스템경비)’, ‘경호경비’, ‘안전관리’ 등의 표현으로 혼재되어 우리 나라 경호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특정 업무를 강조 내지 부각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경호’는 一身上의 ‘신변보호’를 보다 강조하는 용어로 이해되며, ‘경비’는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한편 申昇均³⁾은 公警備인 경찰과 대비되는 民間警備 개념을 제시하고, 민간경비는 지방분권적 自治制警察制度를 유지하고 있는 英·美法系 국가에서 발달하여 왔고, 중앙집권적인 國家警察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大陸法系 국가에서는 제도적 여건상 발달하지 못했으나, 20세기에 이르러 국가경찰력의 한계에 이르러 官民合同의 총체적 방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세세한 개념의 구분과 차이점이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통설로서 정리된 근거를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⁴⁾ 본 연구에서는 경호산업을 구성하는 기초 용어로서 ‘경호’의 개념과 ‘경호산업’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사용하였다.

‘警護’는 ‘護衛’와 ‘警備’가 결합된 개념이다.

따라서 ‘경호산업’은 넓은 의미에서 ‘신변경호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경비업체’와

3) 申昇均, 「韓國 民間警備員 教育訓練制度의 實態와 그 發展方案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碩士 學位論文, 1995, p. 5.

4) 민간경호(private security)란 개념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는 없으며, 심지어 이 용어에 대한 적합성(suitability)조차 존재치 않는다(Green, Gion, Introduction to Security, 3rd ed., Boston: Butterworth Publishers Inc, 1981, p. 23).

‘호송업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호’에 대한 개념 정의의 근거는 ‘大統領警護室法’(1963. 12. 14: 法律 第1507號)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同法律 ‘第2條(定義)’의 第1項에는 ‘護衛’가 개념 정의되어 있고, 第2項에는 ‘警備’가 개념 정의내려져 있다.⁵⁾

이와 같은 개념 정의는 경호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견해⁶⁾에 의하면, 制度上의 警護인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개념’의 한 가지가 될 것이다.

경호와 경호산업에 대한 위와 같은 개념 정의에 의하여 ‘경호기관’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경호기관은 설립의 법적 근거와 근무자가 직무에 임하는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공경호기관’과 ‘민간경호업체’로 구분되는데, 민간경호업체는 다시 주된 업무 영역에 의하여 ‘시설경비업체’, ‘신변경호업체’와 ‘호송경호업체’로 세분된다.

이것은 민간경호업체는 사업상 주된 업무 영역과 대상의 확인이 가능하고, 공경호기관은 업무 특성상 경호가 경비를 명확히 포함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경호산업(security industry)’은 넓은 의미에서 ‘신변경호업체’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시설경비업체’와 ‘호송경호업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民間警備(私警護)의 규모가 公警護를 앞서는 상태에서는 警護産業보다 警備産業(private security marketing)이란 용어 선택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선 민간경비업체가 1994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公警護의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警護産業이란 용어를 채택하였다.

한편 이윤근 교수는 각국의 공경비(public law enforcement)와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의 발전과정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경비산업(private security marketing)’이란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⁷⁾ 이는 민간경비 분야의 종사자와 예산

5) 大統領警護室法 第2條(定義)

① 이 법에서 ‘護衛’라 함은 身體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加해지는 危害를 근접에서 防止 또는 除去하는 行爲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警備’라 함은 生命 또는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特定한 地域을 警戒·巡察·防備하는 行爲를 말한다.

· (대통령경호실 <편>, 「대통령경호실 법령 및 규정집」, 인가근거: 2066-16884<1971. 7. 28>, 1997, p. 7).

6) 金杜炫, 「警護學概論」, 서울: 圖書出版 쟁기, 1995, pp. 23~28.

7) 이윤근, 「각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전망」, 韓國警護警備學會 (編), 「警護警備研究」, 創刊號, 서울: 韓國警護警備學會, 1997, pp. 209~262.

이 공경비를 현저하게 앞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서구 선진국과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용어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경호산업이 국내의 모든 경호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것은 아닐지라도,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된 경호기관의 연도별 설립 추이를 살펴볼 때, 국내 민간경호산업은 1994년 이후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경비업체는 1997년 현재 ‘조사된 총 83개 업체’ 가운데 1994년 이후 52개 업체(63%)가 설립되었으며, 신변경호업체는 ‘조사된 11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73%)가 1994년 이후 설립되었다. 그리고 호송경호는 1994년 이후 2개 업체(50%)가 설립되었다.

나. 경호기관 유형별 현황

1997년도 설문조사한 경호기관의 주요업무 유형별 기관수와 근무자수는 <표 II-1>과 같다. 공경호는 4개 기관이고, 민간경호는 98개 업체인데, 민간경호는 시설경비 83개 업체, 신변경호 11개 업체, 호송경호 4개 업체였다. 그리고 인원수로는 공경호기관이 984명이고, 민간경호는 총 7,238명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시설경비업체 5,829명, 신변경호업체 941명, 호송경호업체 468명이었다.

<표 II-1> 경호기관의 주요업무별 기관수와 근무자수

()속은 %임

구 분	기관수	인원수	평균인원수 (인원수/기관수)
공경호	4 (3.92)	984 (11.97)	246
민간경호	시설경비	83 (81.37)	5,829 (70.90)
	신변경호	11 (10.78)	941 (11.44)
	호송경호	4 (3.92)	468 (5.69)
계	102 (100.00)	8,222 (100.00)	81

※ 연구자가 1997년에 설문조사한 자료로 1996년도 수치임.

이는 우리 나라의 민간경호산업은 시설경비가 기관수와 인원수에 있어서 중심임을 나타낸다. 한편 경호 분야별 ‘평균인원수(인원수÷기관수)’는 공경호, 호송경호, 신변경호, 시설경비 순서였는데, 이는 경호산업의 기관수와 인원수에 있어서 중심적인 시설경비업체가 업체의 규모면에 있어서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소규모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2. 경호직원의 일반적 특성

경호직은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다.

구체적으로 경호직원은 체력단련, 무도, 장비 사용 및 시스템 운용과 안전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훈련'과 '기초소양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종합적이고 집단적으로 조화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응용교육'과 '분야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⁸⁾ 아울러 경호직원은 본인 소지한 여러 물리적 기능이 타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되는 방향에서 불안감없이 소임을 희생적으로 다할 수 있는 바르고 굳건한 심성을 지니도록 지속적인 '심화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 장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직무보수교육'을 꾸준히 필요로 한다.

이처럼 경호직 근무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으로 양성되고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1994년이후 최근에 급속히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우리의 경호산업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호직원의 일반적 직무 과업을 반영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교수하기에 적합한 교육기관의 확충 및 높은 자질을 갖춘 교수요원의 양산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경호/경비업무는 완벽을 요구하는 업무특성과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상황에 대한 불안과 긴장,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양한 업무환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⁹⁾ 현대 과학 문헌에서 스트레스(stress)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느끼게 하는 事象(event)이나 환경적 자극일 수 있으며, 이는 주관적 반응이거나 危害的 침입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일컫는 말일 수가 있는데,¹⁰⁾ 어떠한 의미에 의하거나 근무 중 긴장을 풀 수 없는 경호직원은 직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8) 趙漢鳳, 「선발경호」·「수행경호」·「경호경비」, 대통령경호실(편), 「경호업무편람」, 서울: 대통령경호실, 1997.

9) 김환목, 「경호업무 수행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불안정도 및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1996, 국문초록.

10) Rice, Phillip. L., Stress and Health, 2nd ed., Pacific Grove, CA.: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2, pp. 5~6.

Ⅲ. 경호산업의 재해 실태

1. 재해율과 재해요인의 의미

災害는 人的傷害, 物的損失과 이의 복합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것의 質的 量的인 엄밀한 구분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벨크호프(H. O. Berckhoff)박사의 정의에 의하면, 災害는 인간이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시간의 推移上에 있는 어떤 의도를 수행하고자 해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이면서도 인간 자신의 의사와는 반대로 一時的, 또는 永久的으로 그 행동을 정지시키고 마는 事象이라고 한다.¹¹⁾ 한편 朴弼洙는 재해란 물체, 물질, 인간 또는 방사전의 작용 또는 반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상해 또는 그 가능성이 생기는 것과 같은 예상외의 더욱이 억제되지 않은 事象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¹²⁾ 이처럼 災害는 우발적이며 예상할 수 없는 事象(event)이며, 인간에게 人的 傷害, 物的 損失과 혹은 이 두가지가 일시적 내지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해상의 재해원과 재해요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재해율

재해는 시간의 경과상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災害頻度率(frequency rate)로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해발생수(A)는 근무자수(M), 근무시간(T)과 物的作業條件係數(α)와 함수관계($A=f(\alpha, M, T)$)에 있다.¹³⁾ 즉 재해발생수(A)는 M명의 사람들이 T시간에 일으키고 있는 재해수를 말하며, 따라서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일정하다고 보면 재해발생의 物的作業條件係數(α)는 $A \div (M \times T)$ 로 표시될 수 있다. 이 계수 α 에 포함되고 있는 세밀한 조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보통 업종별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M \times T$ 는 man-hour로서 국제적으로는 1,000,000 시간에 대한 빈도확률이 단위화되고 있는데,¹⁴⁾ 이것이 災害頻度率(frequency rate)이다. 그렇지만 재

11) H. O. Berckhoff, Produktivität und Unfallverhütung, Anregungen aus Einer USA-studienreise에서 인용한 정의를 李根熙, 『增補 安全管理學』(서울: 創知社, 1983), p. 10에서 재인용.

12) 朴弼洙, 『産業安全管理論』, (서울: 중앙경제사, 1997), p. 101.

13) 李根熙, 前掲書, p. 14를 요약정리.

14)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Studies and Reports Series No. 4 (Genova, I. L. O., 1924)를 李根熙, 上掲書, p. 14에서 재인용.

해율을 다루는 모든 조사가 이 기준에 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에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의한 재해율 조사가 시행되어 왔고, 시행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설사 이러한 조건에 충실히 따라서 시행된 재해실태조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 경과속에 발생하는 재해 빈도는 변화를 지속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많은 우연성이 포함되는 것이기에 그 조사 결과를 특정 업종에 대하여 확일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재해율 산정은 근무시간(T)의 고려없이 단지 근무자수(M)만을 중심으로 “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으로 계산되고 있으며,¹⁵⁾ 이때 재해자수는 사망, 부상, 신체장해자와 직업병으로 단순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재해율의 계산 방식은 산정하는 목적에 따라서 年千人率, 度數率, 強度率, 換算災害率, 綜合災害指數, 月萬人率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¹⁶⁾

따라서 재해의 양적 指數인 災害率은 개별 기관의 人的 現況인 人員數(M)와 勤務時間(T)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리고 재해율은 근무여건을 나타내는 ‘物的作業條件係數(α)’와 관련되어 있다.

나. 재해요인

災害要因은 산업재해의 분석과 관련된 개념으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재해예방 대책과 관련이 있다.

산업재해의 기본 요인은 4M이라고 하여 Man(error를 일으키는 인간요인), Machine(기계설비의 결함, 고장 등의 물적 요인), Media(작업의 정보, 방법, 환경 등의 요인), Management(관리상의 요인)가 제기되고 있다.¹⁷⁾

한편 하인리히(H. W. Heinrich)는 그의 저서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산업사고 예방)에서 ‘산업안전의 원리’와 ‘사고의 상관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재해사고의 원인에서 발생에 이르는 時系列的 경과(accident sequence)로서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 행위 또는 ‘불안 전상태(물리적, 기계적 위험)’” ⇨ “사고” ⇨ “상해(산업재해)”>의 5단계를 제시하였다.¹⁸⁾ 이는 재해예방의 중심 과제가

15) 노동부, 前揭書, p. 7.

16) 朴弼洙, 前揭書, pp. 147~155.

17) 朴弼洙, 上揭書, p. 131.

18) 朴弼洙, 上揭書, pp. 114~119.를 요약

“불안전 행위(unsafe act)와 불안전 상태(unsafe condition)”의 배제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인간의 부주의’와 ‘위험상태’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인리히의 원리는 버드(Frank E. Bird Jr)의 ‘최신의 도미노(domino)이론’¹⁹⁾에 의해서 개선되었다. 이는 하인리히의 時系列的 경과(accident sequence)를 <“제어²⁰⁾의 부족(관리)” ⇨ “기본원인²¹⁾(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실)”>의 5단계로 개선한 것인데,²²⁾ 이 가운데 의미있는 사항은 재해요인의 근원을 “기본원인(기원)”과 “직접원인(징후)”으로 세분하여 재해의 직접적 원인인 “기본원인”의 제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災害要因들은 人側要因과 物側要因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작업의 기계화와 자동화 정도가 높아져 사람의 기능에 직접 의존하는 작업이 감소될지라도 人側要因에 의한 재해발생은 호전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²³⁾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산업의 災害要因分析은 ‘개별적 재해의 구체적 내용’과 ‘업종별 재해발생 조건과 상황’을 조사하여 재해의 특성을 밝혀낼 때 분석이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재해발생 조건과 상황(업종별 재해의 일반 사항)’ 및 ‘재해의 내용과 개요(재해별 개별 사항)’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 ‘재해요인(재해의 질적 측면)’은 ‘업종별 재해특성’과 ‘업종별 재해예방과제’와 연관되어 있다.

근무자수와 근무시간을 기초로 하여 재해율을 산정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재해의 양적 측면으로 그 업종의 위험성(物的作業條件係數: α)과 재해가능성을 나타내 준다. 한편 재해의 구체적 내용(재해별 개별 사항)과 업종별 재해발생 조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때, 재해의 질적 측면인 재해요인이 파악되고, 이로부터 업종별 재해 특성과 재해예방과제의 추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 해보면 <그림Ⅲ-1>과 같다.

19) ‘고전적 도미노이론’에서는 재해예방이 ‘직접원인’의 제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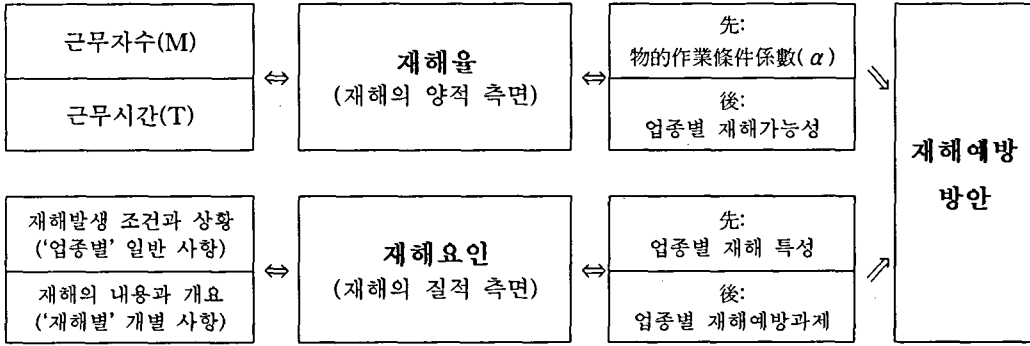
20) ‘제어’에는 ‘안전관리계획’, ‘직무계획’, ‘실시기준’, ‘기준에 의한 실적 평가’, ‘계획의 개선 등의 수정’이 포함된다.

21) ‘기본적 요인’은 재해/사고의 배후적 원인이 되는 요인인데, ‘개인적 요인’과 ‘작업상의 요인’으로 세분된다.

22) 朴弼洙, 前掲書, pp. 129~131.

23) 朴弼洙, 上掲書, pp. 81~82.를 요약.

<그림 III-1> 재해율 및 재해요인과 재해예방방안의 관계



2. 경호산업 재해자의 실태

경호산업 재해자의 실태는 취업상태(상근직과 임시직), 연령, 성별, 근속기간, 학력을 중심으로 살펴서 재해자의 인적 특성을 질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가. 취업상태

설문조사된 1996년도 경호산업 전체 근무자의 상근직과 임시직 현황에 의하면, 임시직 인원수 1,235명은 전체 근무자수 8,222명에 대하여는 15.02%였다. 분야별로는 신변경호 임시직 인원수가 41.55%(391명)로 공경호 14.63%(144명), 시설경비 11.53%(672명)와 호송경호 5.98%(28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

<표 III-1> 경호산업 근무자의 상근직과 임시직 현황

단위: 명, ()속은 %임

구 분	근무자수	상근직 인원수	임시직 인원수	
공경호	984 (100.00)	840 (85.37)	144 (14.63)	
민간경호	시설경비	5,829 (100.00)	5,157 (88.47)	672 (11.53)
	신변경호	941 (100.00)	550 (58.45)	391 (41.55)
	호송경호	468 (100.00)	440 (94.02)	28 (5.98)
계	8,222 (100.00)	6,987 (84.98)	1,235 (15.02)	

※ 연구자가 1997년에 설문조사한 자료로 1996년도 수치임.

설문조사된 1996년도 경호기관 임시직 인원수 비율 15.02%는 <표Ⅲ-1>에 나타나 있는 1991~1997년간의 경호산업 전체 재해자 106명에 대한 임시직 인원수 16명의 비율인 15.09%와 대체로 비슷하였다. 따라서 경호산업의 상근직과 임시직 취업 상태는 재해와 두드러진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 것이다.

나. 연령

설문조사된 1996년도 경호산업 전체 근무자의 연령 현황에 의하면, 20대가 2,254명(27.41%)이고, 30대가 1,075명(13.07%)이며, 40대가 1,274명(15.50%)이고, 50대 이상이 3,619명(44.02%)이었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의 인원수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수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경비업체의 50대 이상 근무자수가 3,453명으로 전체 인원수에 대한 비율이 42.00%에 이르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로 해석된다.

그래서 시설경비업체를 제외한 공경호기관과 신변경호업체 및 호송경호업체의 근무자는 20대가 양적으로 중심이었다. 구체적으로 20대 근무자의 비율과 인원수는 공경호기관 64.13%(631명), 신변경호업체 63.76%(600명), 호송경호업체 37.18%(174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 그렇지만 시설경비업체는 50대 이상 59.24%(3,453명), 40대 17.40%(1,014명), 20대 14.57%(849명), 30대 8.80%(5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호산업 근무자의 연령 현황과는 대조적으로 설문조사된 1991~1997년간의 전체 재해자 106명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경호 분야에서는 20대 근무자보다 다른 연령대 근무자의 재해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재해자 106명에 대한 비율을 연령층별로 합해 보면, 50대 이상이 47명으로 44.34%였고, 20대는 30명으로 28.3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15명으로 14.51%였고, 30대의 재해자 비율은 14명 13.21%로 가장 적었다.

이는 전체 근무자에 대한 연령층별 인원수와 비율이 50대 이상이 3,619명(44.02%), 20대가 2,254명(27.41%), 40대가 1,274명(15.50%), 30대가 1,075명(13.07%)인 것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변경호업체는 50대 이상 재해자의 인원수와 비율이 주목할 만하고, 신변경호업체와 호송경호업체의 30대 근무자에게는 재해가 없음이 주목된다.

다. 성 별

설문조사된 1996년도 경호산업 전체 근무자의 성별 분포에 따르면, 근무자 8,222명 가운데 여성은 82명으로 그 비율이 1%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재해자의 성별 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된 1991~1997년간의 전체 재해자 106명 가운데 여성 인원수와 비율은 8명으로 7.55%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 재해는 시설경비업체가 7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신변경호업체에 1명이 있었다. 설문조사된 공경호기관과 호송경호업체에는 여성 근무자가 없었기에 여성 재해자가 없었다.

라. 근무기간

설문조사된 1996년도 경호산업 근무자의 근무기간 현황을 기간별로 종합한 바에 의하면, 6개월 미만 근무자는 2,131명으로 25.92%였고, 6개월~1년 미만 근무자는 2,601명으로 31.63%였으며, 1~2년 근무자는 1,715명으로 20.86%였고, 2~3년 근무자는 711명으로 8.65%였으며, 3년 이상 근무자는 1,064명으로 12.94%였다. 그래서 설문조사된 경호산업 근무자 총 8,222명 가운데 4,732명이 1년 미만의 근무자로 5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경호산업이 1994년 이후 양적으로 현저하게 성장한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호산업이 단기간의 임시직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무교육이 꾸준히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직무 이해와 안전 및 소양 교육이 경호산업에 요구됨은 재해자의 근무기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호산업 재해자의 근무기간 현황인 <표Ⅲ-2>에 의하면, 설문조사된 경호산업 재해자 총 106명 가운데 50명인 47.17%가 6개월 미만의 근무 상태에서 재해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호송경호업체의 재해자는 100%가 6개월 미만의 근무자였고, 신변경호업체는 87.5%가 6개월 미만의 근무자였으며, 시설경비는 51.32%가 6개월 미만의 근무자였다. 그런데 사전 훈련과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볼 수 있는 공경호기관의 6개월 미만 근무자 재해율은 10%에 불과했다.

따라서 경호산업 근무자는 현장 투입에 앞서서 보다 철저한 사전 업무 이해와 교육을 통하여 재해를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호기관은 보다 안정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엿보게 해주는 수치로 이를 해석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표 III-2> 경호산업과 주요산업 재해자의 근속기간 비교

단위: 명, ()속은 %임

구 분	경호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6개월 미만	50 (47.17)	309 (20.56)	11,153 (34.00)	36 (26.87)
6개월 ~1년	16 (15.09)	102 (6.79)	3,795 (11.57)	6 (4.48)
1~2년	23 (21.70)	133 (8.85)	4,561 (13.90)	17 (12.69)
2~3년	9 (8.49)	113 (7.52)	2,635 (8.03)	8 (5.97)
3년 이상	8 (7.55)	846 (56.29)	10,661 (32.50)	67 (50.00)
계	106 (100.00)	1,503 (100.00)	32,805 (100.00)	134 (100.00)
구 분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타	총계
6개월 미만	17,651 (89.21)	2,856 (31.48)	2,922 (35.42)	34,927 (48.82)
6개월 ~1년	1,027 (5.19)	1,130 (12.46)	1,092 (13.24)	7,152 (10.00)
1~2년	556 (2.81)	1,379 (15.20)	1,213 (14.70)	7,859 (10.98)
2~3년	180 (0.91)	695 (7.66)	689 (8.35)	4,320 (6.04)
3년 이상	371 (1.88)	3,012 (33.20)	2,333 (28.28)	17,290 (24.17)
계	19,785 (100.00)	9,072 (100.00)	8,249 (100.00)	71,548 (100.00)

※ 경호산업자료는 연구자가 1997년에 설문조사한 것으로 1991~1997년간 인적 재해의 누계이기
에, 단지 비율제시에만 의미가 있음.

※ 경호산업 이외의 자료는 勞動部 자료인 「'96産業災害分析」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 '기타'는 '임업', '어업', '농업'과 '기타의 사업'을 포함.

마. 학 력

설문조사된 1996년도 경호산업 근무자의 학력 현황을 종합해 보면, 학력별 인원수와

비율은 중졸 이하가 2,583명으로 31.42%였고, 고졸이 4,345명(5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재학 내지 중퇴는 761명으로 9.26%였고, 대졸 이상은 533명으로 6.48%였다.

학력을 기준으로 볼 때, 공경호기관의 근무자는 전원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였는데, 대학 재학 내지 중퇴의 학력 소지자만도 359명으로 36.49%였다.

한편 설문조사된 1991~1997년간의 재해자 총 106명의 학력 현황을 종합해 보면, 국졸 이하는 13명(12.26%), 중졸은 24명(22.64%), 고졸은 49명(46.23%), 대재는 14명(13.21%), 대졸은 6명(5.66%)이었기에, 학력과 재해 사이에 두드러진 관련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바. 평균근무시간

경호산업 근무자의 주당 평균근무시간 조사시 '상근직'은 1년 이상 근무가 고용계약된 정액제 월급근무자로 하였고, '임시직'은 '수당제 급여 근무자' 혹은 '한시직 근무자'(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월급근무자)로 하였다.²⁴⁾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문조사된 경호산업 근무자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정리한 <표Ⅲ-3>에 의하면, 상근직은 시설경비(65.01시간), 공경호(58.75시간), 호송경호(54.33시간), 신변경호(40.56시간) 순이었고, 임시직은 호송경호(76.00시간), 시설경비(61.77시간), 공경호(35.00시간), 신변경호(20.29시간) 순서로 근무시간이 길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호송경호 임시직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고, 상근직 중에서는 시설경비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신변경호는 상근직과 임시직 모두 근무시간이 가장 짧았다.

이것은 설문조사된 총 재해자 106명 가운데 시설경비업체 상근직이 64명으로 총 재해자 가운데 6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경호기관 상근직이 20명으로 18.87%를 차지하고 있는 '경호산업 재해자의 취업상태 현황'을 참조해 보면, 외형상 근무시간과 재해가 어느 정도 相關이 있음을 나타내 주지만, 이러한 관련성은 취업상태별 전체 근무자 규모와 함께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4) 이는 노동부가 발행하는 「노동통계연감」의 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분류와 종사자의 지위에서 '상용고'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임시고'는 '임금 및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 1개월 이상인 자'라는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설문 응답방향을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단순화시킨 것이다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서울: 노동부, 1990, pp. 429~431의 조사개요에 제시된 '경제활동인구' 용어의 정의를 참조).

<표 III-3> 경호산업 근무자의 주당 평균근무시간

단위: 시간

구 분		상근직	임시직
공경호		58.75	35.00
민간경호	시설경비	65.01	61.77
	신변경호	40.56	20.29
	호송경호	54.33	76.00

- ※ '상근직'은 1년 이상 근무가 고용계약된 정액제 월급근무자를 의미.
- ※ '임시직'은 '수당제 급여 근무자' 혹은 '한시직 근무자'(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월급근무자)를 의미.
- ※ 연구자가 1997년에 설문조사한 자료임.

3. 경호산업의 재해 현황

경호산업의 재해 현황은 '재해유형별 재해자수', '상해 부위 및 종류', '발생 상황 및 형태', '발생 시간 및 장소', '동시근무자수', '인적 규모'로 세분하여 경호산업 재해요인을 질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재해유형별 재해자수

재해자수는 사망, 부상, 신체장해와 직업병으로 세분된다.²⁵⁾ 이를 기준으로 경호산업 재해를 구분해 보면, 부상이 81명(76.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체장애가 11명(10.38%), 직업병이 10명(9.43%), 사망이 4명(3.77%) 순으로 나타났다.

경호산업 재해를 여타의 주요 산업재해와 비교한 <표III-4>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28일 이하의 경미한 부상'이 높은 비중(23.59%)을 차지하며, '사망을 포함하여 91일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21.69%)을 알 수 있다.

25) 노동부, 前掲 1995산업재해분석, p. 7.

<표 III-4> 경호산업과 주요산업 재해자의 요양기간 비교

단위: 명, ()속은 %임

구 분	경호산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7일	3 (2.83)	207 (13.77)	527 (1.61)	2 (1.49)
8~14일	8 (7.55)	6 (0.40)	196 (0.60)	0 (0.00)
15~28일	14 (13.21)	66 (4.40)	1,961 (5.98)	6 (4.48)
29~90일	58 (54.72)	378 (25.15)	18,624 (56.77)	69 (51.49)
91~180일	6 (5.66)	322 (21.42)	9,250 (28.20)	25 (18.66)
6개월 이상	13 (12.26)	158 (10.51)	1,576 (4.80)	11 (8.21)
사망	4 (3.77)	366 (24.35)	671 (2.05)	21 (15.67)
계	106 (100.00)	1,503 (100.00)	32,805 (100.00)	134 (100.00)
구 분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 타	총 계
4~7일	192 (0.97)	110 (1.21)	96 (1.16)	1,134 (1.58)
8~14일	120 (0.61)	73 (0.80)	119 (1.44)	514 (0.72)
15~28일	1,124 (5.68)	994 (10.96)	1,158 (14.04)	5,309 (7.42)
29~90일	9,935 (50.21)	5,053 (55.70)	4,281 (51.90)	38,340 (53.59)
91~180일	6,274 (31.71)	2,067 (22.78)	1,831 (22.20)	19,769 (27.63)
6개월 이상	1,351 (6.83)	359 (3.96)	357 (4.33)	3,812 (5.33)
사망	789 (3.99)	416 (4.59)	407 (4.93)	2,670 (3.73)
계	19,785 (100.00)	9,072 (100.00)	8,249 (100.00)	71,548 (100.00)

※ 경호산업자료는 연구자가 설문조사한 것으로 1991~1997년간 인적 재해의 누계이기에, 단지 비율제시에만 의미가 있음.

※ 경호산업 이외의 자료는 勞働部 자료인 『'96産業災害分析』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 '기타'는 '임업', '어업', '농업'과 '기타의 사업'을 포함.

나. 상해 부위 및 종류

상해부위는 머리(두부), 얼굴(안면부),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기타(구체적으로 기재)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는데, 이는 노동부의 재해분석 방식²⁶⁾에 나오는 상해부위를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었다.

경호산업 재해자의 상해 부위를 정리한 바를 종합해 보면, 다리가 26명(2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척추 12명(11.32%), 얼굴과 전신은 각각 11명으로 10.38%였으며, 손가락 9명(8.49%), 발 7명(6.60%), 머리와 팔이 각각 5명(4.72%), 어깨가 4명(3.77%) 순서였는데, 이는 경호직의 활동성에 의해 비롯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주요 업무별로 볼 때, 호송경호는 손가락이 2명(100%), 신변경호는 얼굴이 3명(37.5%), 시설경비는 다리가 21명(27.63%), 공경호는 전신이 10명(50%)으로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개개의 경호기관이 근무자의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염두해야 할 사항으로 주목해 볼만하다.

그리고 상해 종류는 골절(뼈부러짐), 동상, 부종, 찢림(창상), 타박상, 절상, 중독·질식, 찰과상(벗겨짐), 자상(베임), 화상, 뇌진탕, 익사, 피부병, 청력장해, 시력장해, 인대/근육파열, 총상과 기타(구체적으로 기재)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는데, 이 가운데 경호산업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시한 '인대·근육파열과 총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노동부의 재해분석 방식²⁶⁾에 나오는 상해종류를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었다.

설문조사된 상해종류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골절이 67명(63.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타박상이 12명(11.32%)이었으며, 뇌진탕·찢림·찰과상은 각각 4명(3.77%)이었고, 의외로 인대파열은 3명(2.83%)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와 비율은 개개의 경호기관과 업체를 살펴보아도 골절이 가장 높은 상해 종류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 발생 상황 및 형태

경호산업 재해의 발생 상황을 정리한 <표 III-5>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일상업무중 재해발생이 76건 71.70%로 가장 많았고, 이동 중 재해발생은 26건 24.53%였으며, 출퇴근 중 재해발생은 예상과는 다르게 4건 3.77%로 현저하게 저조한 사례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향과는 다르게 신변경호는 이동 중 재해발생이 5건 62.5%로 가장 높았다.

26) 노동부, 前掲書, p. 126.

27) 노동부, 上掲書, p. 125.

<표 III-5> 경호산업 재해의 발생 상황

단위: 명, ()속은 %임

구 분		구분	재해자수	전체 재해자수에 대한 비율
공경호		이동중	10	(9.43)
		일상업무중	10	(9.43)
민간경호	시설경비	이동중	11	(10.38)
		일상업무중	61	(57.55)
		출퇴근중	4	(3.77)
	신변경호	이동중	5	(4.72)
		일상업무중	3	(2.83)
	호송경호	일상업무중	2	(1.89)
계			106	(100.00)

※ 연구자가 1997년에 설문조사한 자료로 1991~1997년간 인적 재해의 누계임.

그리고 재해의 발생 형태로는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붕괴, 협착, 감전, 폭발, 파열, 화재, 무리한 동작, 이상온도 접촉, 유해물 접촉, 기타, 훈련·운동, 대인 공격, 총기 사고, 사적인 싸움, 교통사고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는데, 이 가운데 경호산업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시한 ‘훈련·운동, 대인 공격, 총기 사고, 사적인 싸움,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동부의 재해분석 방식²⁸⁾에 나오는 재해발생형태를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었다.

경호산업 재해의 발생 형태를 정리한 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30명 28.30%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도가 26명 24.53%, 충돌이 11명 10.38%, 무리한 동작이 9명 8.49%, 추락이 7명 6.60%, 훈련은 6명에 5.65%에 불과했다.

그리고 시설경비의 재해 발생형태는 여타의 경호산업유형에 비하여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28) 노동부, 前掲書, p. 132.

<표 III-6> 경호산업과 주요산업 재해발생시간 비교

단위: 명, ()속은 %임

구 분	경호산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0~2시	2 (1.89)	194 (12.91)	734 (2.24)	2 (1.49)
2~4시	4 (3.77)	29 (1.93)	554 (1.69)	0 (0.00)
4~6시	4 (3.77)	31 (2.06)	546 (1.66)	3 (2.24)
6~8시	12 (11.32)	180 (11.98)	2,450 (7.47)	9 (6.72)
8~10시	19 (17.92)	434 (28.88)	7,049 (21.49)	25 (18.66)
10~12시	12 (11.32)	173 (11.51)	4,953 (15.10)	24 (17.91)
12~14시	19 (17.92)	139 (9.25)	4,523 (13.79)	21 (15.67)
14~16시	11 (10.38)	136 (9.05)	5,851 (17.84)	25 (18.66)
16~18시	4 (3.77)	86 (5.72)	3,061 (9.33)	11 (8.21)
18~20시	6 (5.66)	48 (3.19)	1,692 (5.16)	8 (5.97)
20~22시	7 (6.60)	34 (2.26)	913 (2.78)	3 (2.24)
22~24시	6 (5.66)	19 (1.26)	479 (1.46)	3 (2.24)
계	106 (100.00)	1,503 (100.00)	32,805 (100.00)	134 (100.00)
구 분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 타	총 계
0~2시	168 (0.85)	512 (5.64)	210 (2.55)	1,820 (2.54)
2~4시	58 (0.29)	429 (4.73)	150 (1.82)	1,220 (1.71)
4~6시	77 (0.39)	575 (6.34)	351 (4.26)	1,583 (2.21)
6~8시	1,798 (9.09)	703 (7.75)	640 (7.76)	5,780 (8.08)
8~10시	4,561 (23.05)	1,619 (17.85)	1,555 (18.85)	15,243 (21.30)
10~12시	3,277 (16.56)	1,122 (12.37)	1,320 (16.00)	10,869 (15.19)
12~14시	3,234 (16.35)	1,085 (11.96)	1,197 (14.51)	10,199 (14.25)
14~16시	4,236 (21.41)	1,239 (13.66)	1,382 (16.75)	12,869 (17.99)
16~18시	2,008 (10.15)	749 (8.26)	714 (8.66)	6,629 (9.27)
18~20시	244 (1.23)	438 (4.83)	353 (4.28)	2,783 (3.89)
20~22시	95 (0.48)	342 (3.77)	235 (2.85)	1,622 (2.27)
22~24시	29 (0.15)	259 (2.85)	142 (1.72)	931 (1.30)
계	19,785 (100.00)	9,072 (100.00)	8,249 (100.00)	71,548 (100.00)

※ 경호산업자료는 연구자가 설문조사한 것으로 1991~1997년간 인적 재해의 누계이기에, 단지 비율 제시에만 의미가 있음.

※ 경호산업 이외의 자료는 勞動部에서 1997년 11월 현재 편집중인 『'96産業災害分析』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 '기타'는 '임업', '어업', '농업'과 '기타의 사업'을 포함.

한편 경호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인 공격에 의한 재해 발생은 호송경호에서는 1명으로 50%였고, 신변경호에서는 2명으로 25%였으나, 시설경비에서는 2명 2.63%에 불과했고, 공경호에 대한 대인 공격은 1991~1997년간의 설문조사대상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경호업무 본연의 관점에서 볼 때, 공경호기관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호송경호업체와 신변경호업체는 대인 공격에 대한 준비가 보다 절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라. 발생 시간 및 장소

경호산업 재해의 발생 시간이 타사업과 비교·정리한 바에 의하면, 오후 2시경이 15명 14.15%로 재해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고, 오전 10시경이 11명으로 10.38%였고, 그 다음은 오전 8시경으로 10명 9.43%였다.<표 III-6> 참조)

이는 출근 전후에 아직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점심 식사 이후 긴장이 풀어지는 오후 2시경이 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내와 실외를 놓고 볼 때, 경호산업의 재해는 주로 실외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표 III-7> 경호산업 재해의 발생 장소

단위: 명, ()속은 %임

구 분		재해장소	재해자수	전체 재해자수에 대한 비율
공경호		실내	4	(3.77)
		옥외	16	(15.09)
민간경호	시설경비	실내	35	(33.02)
		옥외	41	(38.68)
	신변경호	실내	2	(1.89)
		옥외	6	(5.66)
	호송경호	옥외	2	(1.89)
계			106	(100.00)

* 연구자가 1997년에 설문조사한 자료로 1991~1997년간 인적 재해의 누계임.

구체적으로 경호산업 재해의 발생 장소를 정리한 <표 III-7>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재해는 실외에서 65명 61.32%가 발생한 반면에 실내에서는 41명 38.68%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업무 특성상 시설경비업체는 재해의 45.05%인 35명이 실내에서 재해를 입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마. 동시근무자수

재해발생시 동시근무자수를 확인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조의 편성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독근무, 2인, 3인, 4인 이상은 노동부 재해분석 방식에 나오는 동시작업인원수의 구분²⁹⁾을 제시한 것이었다.

경호산업 재해발생시 동시근무자수를 정리한 <표 III-8>을 종합해 보면, 단독근무시 재해가 52명 49.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4인 이상 동시근무가 34명 32.08%였으며, 2인 동시근무는 18명 16.98%였으나, 의외로 3인 동시근무시 재해발생은 2명 1.89%로 가장 낮았다.

이는 3인 동시근무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초래되는 수치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으나, 재해빈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 만큼은 일단 주목해 볼 만하다.

<표 III-8> 경호산업 재해발생시 동시근무자수

단위: 명, ()속은 %임

구 분		동시근무자수	재해자수	전체 재해자수에 대한 비율
공경호		단독근무	4	(3.77)
		2인	2	(1.89)
		4인 이상	14	(13.21)
민간경호	시설경비	단독근무	45	(42.45)
		2인	16	(15.09)
		3인	1	(0.94)
		4인 이상	14	(13.21)
	신변경호	단독근무	3	(2.83)
		4인 이상	5	(4.72)
	호송경호	3인	1	(0.94)
		4인 이상	1	(0.94)
계			106	(100.00)

※ 연구자가 1997년에 설문조사한 자료로 1991~1997년간 인적 재해의 누계임.

29) 노동부, 前掲書, p. 127에서는 동시작업인원을 혼자, 2~3명과 4인 이상으로 셋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바. 인적 규모

경호산업 재해의 인적 규모는 한 번의 재해로 재해를 당하는 '단위 재해당 피재해자수'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 본 경호산업 재해에 관한 자료들이 불과 몇 번의 재해에 의한 것이지 아니면 많은 재해에 의하여 누적된 수치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경호산업 재해의 인적 규모를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동시 재해자수가 1명인 재해 건수가 86건으로 95.56%이었고, 2명·3명·5명인 재해가 각각 1건이었다. 그렇지만 공경호기관의 재해는 총 2건으로 1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동시에 재해를 당한 경우가 있음을 볼 때, 공경호기관은 재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1번의 재해로 많은 인원이 재해를 당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경호산업의 재해예방 방안

1. 경호산업의 재해율 분석

재해율은 재해의 양적 측면으로 그 업종의 위험성(物的作業條件係數: α)과 재해가능성을 나타내 준다. 본 연구에서 재해율은 '설문조사된 업체의 재해율'을 업체별로 모두 記述統計의으로 산출하였고, '경호산업 분야별 재해율'을 별도로 계산하였다.

노동부의 재해율 산정방식인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에 의하면, 설문조사된 경호산업의 1996년도 (인적) 재해율은 0.43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경비업체(0.54%), 호송경호업체(0.21%), 공경호기관(0.20%), 신변경호업체(0.12%) 순서로 재해율이 높았다.(<표 IV-1> 참조) 한편, 경호산업 분야별 재해기관수의 비율은 공경호기관(50.00%), 시설경비업체(28.00%), 호송경호기관(25.00%), 신변경호업체(14.29%) 순서였다. 이것을 민간경호업체만을 중심으로 종합해 보면, '人的 재해율'과 '기관수 재해율'에 있어서 모두 시설경비업체의 재해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호송경비업체였으며, 신변경호업체는 예상과는 다르게 재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된 업체별 人的 재해율의 기복' 역시 시설경비업체가 0.20~11.11% 범위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표 IV-1> 1996년도 업종별 재해율

업종	재해율	업종	재해율	업종	재해율
경호산업 합계	0.43	코크스및석탄가스 제조업	1.59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0.65
공경호	0.20	고무제품제조업	0.8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소계	1.28
시설경비	0.54	도자기제품제조업	0.78	철도, 궤도 및 삭도운수업	0.28
신변경호	0.12	유리제조업	1.30	자동차여객운수업	1.17
호송경호	0.21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1.58	소형자동차운수업	0.62
총 계	0.88	시멘트제조업	0.99	화물자동차운수업	3.87
광업 소계	4.86	시멘트원료 채굴및제조업	1.05	수상운수업	1.87
석탄광업	7.1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26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1.58
금속 및 비금속광업	9.81	금속제련업	0.42	항공운수업	0.59
채석업	3.46	금속재료제품제조업	2.29	운수관련서비스업	0.27
석회석 광업	3.58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갑)	2.47	창고업	1.27
제염업	1.2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을)	5.73	통신업	0.69
기타 광업	2.84	도금업	1.49	임업 소계	0.80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1.36	기계기구제조업	1.72	벌목업	17.20
제조업 소계	1.1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0.82	기타의 임업	0.71
식료품제조업	1.02	전자제품제조업	0.21	어업 소계	5.12
담배제조업	0.31	선박건조및수리업	2.26	어업	5.12
섬유또는섬유제품 제조업(갑)	0.33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갑)	1.24	농업 소계	1.16
섬유또는섬유제품 제조업(을)	0.8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1.73	농업	1.16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2.52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0.63	기타의 사업 소계	0.40
목재제품제조업	2.17	수제품제조업	0.66	농수산물위탁 판매업	1.72
펄프및지류제조업	1.51	기타제조업	1.43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0.74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0.12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소계	0.2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98
인쇄업	0.97	전기가스및상수도업	0.23	건설기계관리사업	1.24
경인쇄업	0.14	건설업 소계	0.81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0.87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34	일반건설공사(갑)	0.82	기타의 각종사업	0.29
화학제품제조업	1.17	일반건설공사(을)	0.60		
의약품및화장품 향료제조업	0.33	중건설공사	1.01		

※ 자료: 勞勤部 産業安全局 安全政策課, 『'96産業災害分析』, 미간행 전산자료, 서울: 勞勤部, 1997. 11.

※ 경호산업 재해율은 연구자가 1997년에 설문조사한 자료로 1996년도 수치임.

‘설문조사된 업체별 人的 재해율’은 공경호기관은 0.68~0.76% 범위였고, 시설경비업체는 0.20~11.11% 범위에 있었으며, 신변경호업체는 0.12~0.43% 범위였고, 호송경호업체는 1.25%였다. 따라서 人的 재해율의 기복 역시 시설경비업체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계산된 재해율의 결과는 경호산업의 모든 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산출된 결과치가 아니기에 단지 재해율의 경향만을 파악하는 정도로 해석하여야 될 것이다.

‘其他의 各種事業’의 평균재해율이 0.29인데 비하여, 시설경비(0.54)를 제외한 나머지 경호분야는 이보다 재해율이 낮았다.

특히 신변경호(0.12)·공경호(0.20)·호송경호(0.21) 분야는 근무조건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전자제품제조업’의 재해율(0.21)과 비슷하였음은 주목할만하다.

재해율은 학문적 이론상 근무자수(M)와 근무시간(T)이 독립변수이지만, 국내의 재해율 산정은 근무시간(T)의 고려없이 단지 근무자수(M)만을 중심으로 “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으로 양적인 측면만 계산되고 있다.

2. 경호산업의 재해예방 방안

재해의 구체적 사례(재해별 개별 사항)와 업종별 재해발생 조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재해의 질적 측면인 재해요인이 파악되고, 이로부터 업종별 재해 특성과 재해예방과제의 추출이 가능하게 된다. 설문조사된 ‘경호산업 재해 현황’을 중심으로 재해요인을 탐색하여 발견한 의미있는 재해예방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호산업 재해요인은 일차적으로 경호기관의 연륜과 재해자의 근속기간이 짧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즉 경호기관의 설립은 1994년 이후 최근에 양적으로 크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자가 57.6%³⁰⁾에 이르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경호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된 재해자의 47.17%가 6개월 미만의 근속 상태에서 업무를 숙지

30)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호산업 재해자 비율은 62.26%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여타의 산업과 비교해 볼 때 건설업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이 확인되었다(<표Ⅲ-2>참조).

하지 못한 채 재해를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재해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호송경호업체는 100%, 신변경호업체는 87.5%, 시설경비업체는 51.32%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호산업재해는 하루 24시간 중 출근 무렵인 오전 8시경과 출근 후 업무에 대한 긴장이 덜 된 오전 10시경과 특히 점심 식사후인 오후 2시경에 빈번히 발생했음이 확인되는데,³¹⁾ 이것은 재해의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이 심리적 이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해 준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기본 요인을 4M이라고 하여, Man(error를 일으키는 인간요인), Machine(기계설비의 결함, 고장 등의 물적 요인), Media(작업의 정보, 방법, 환경 등의 요인), Management(관리상의 요인)를 상정해 본다면,³²⁾ 경호산업의 재해요인은 주로 Man(인간요인)과 Management(관리요인)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전 재해예방 훈련이나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재해를 미연에 감소시킬만한 체계와 운영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에게 재해의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호산업 재해요인으로부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발견된 의미있는 사실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호산업 재해자의 47.17%가 6개월 미만의 근속 상태에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채 재해를 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사 후 초기에 재해예방과 업무이해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이 적절히 실시되어야 하겠다. 특히 시설경비업체는 59.24%라는 높은 인적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근무자(older worker)들이 직장과 가정 양쪽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이에 끼여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음”³³⁾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여건의 배려와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호산업 재해자의 상해 부위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경호 분야별로 상이한 신체 부위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호송경호분야는 손가락 보호를 위한 예방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고, 신변경호분야는 얼굴 보호를 위한 방안이 그리고 시설경비분야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도 다리 보호

31) <표 III-6>참조. 경호산업 재해발생시간을 여타 산업의 재해발생시간과 비교해 볼 때, 특정 시간대에 재해가 집중됨은 상대적으로 미약함이 발견되는데, 이는 경호산업 근무자가 근무중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특정 업무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朴弼洙, 前掲書, p. 131.

33) Hale, Noreen, *The Older Worker: Effective Strategies for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0, p. 108.

를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상해종류에 있어서 모든 경호기관이 골절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타박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경호산업 재해는 출퇴근 중보다는 일상업무 중에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교통사고·전도를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인공격에 의한 재해의 대비는 호송경호분야와 신변경호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해예방을 보다 강조해야 할 시간은 출근 무렵인 오전 8시경과 출근 후 아직 긴장이 덜 된 오전 10시경과 특히 점심 식사후인 오후 2시경으로 확인되기에, 이 무렵에는 재해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경비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경호분야는 옥외에서 활동할 때 재해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경호기관의 근무조는 1인, 2인, 4인 이상을 한 개 근무조로 편성하기보다는 3인 1조로 운영함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편 가능하다면 단독(1인) 근무는 피하여야 할 것이다.

경호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성장산업으로서 국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훈련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³⁴⁾되는 측면에서 경호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 론

경호/경비 산업은 국내 주요 기관과 업체의 핵심적인 人的·物的 정보를 업무의 특성상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선진 외국의 우수한 경호/경비 업체가 IMF경제개방 하에서 우리 업체들을 제치고 국내에 기반을 내리게 될 경우에, 국내 公的·私的 주요 인물들과 기관들의 현황과 중요 정보가 해외로 반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제 바야흐로 세계화의 물결속에 경호산업이 개방되고 서구의 우수한 장비와 조직을 갖춘 경호업체들이 우리 산업과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들 서구 업체에 국내의 우수한 경호직원들이 근무하며 우리의 중요 업체와 인사들에게 질 높은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시기도 멀지 않은 것이다. 이 때가 되면, 경제적 경쟁 상대에 있는 서구 선진국은 우리에게 관한 고급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34) 申昇均, 前掲論文, p. 85.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안보적 수준에서도 대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경호업체는 스스로 업무와 재해 특성을 꾸준히 분석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산업재해는 재해요인분석에 기초한 예방방안확립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분석과 재해예방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지 못한다면 경호산업의 직업적 안정을 증진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 경호직의 활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경호산업의 재해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 선입관은 다르게 경호직은 재해율과 재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론적 논의의 연구결과가 경호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 김두현,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1995.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1990.
——, 1995산업재해분석, 노동부, 1996.
박필수, 산업안전관리론, 중앙경제사, 1997.
이근희, 안전관리학, 창지사, 1983.
김환목, 경호업무 수행공무원의 스트레스와 불안정도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윤근, 각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편),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7.

▣ 외국문헌

- Gion Green, Introduction to Security, 3rd ed., Boston : Butterworth Publishers Inc, 1981.
Noreen, Hale, The Older Worker : Effective Strategies for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San Francisco : Jossey - Bass Publishers, 1990.
Phillip. L., Rice, Stress and Health, 2nd ed., Pacific Grove, CA.: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2.

ABSTRACT

A Study on Prevention of Accident in Korean Security Industry

By Cho, Han Bong

The Security Industry has dynamic working conditions. So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advisable direction for the reduction of accidents. To achieve the aim, the investigation of documents and the examinations of actual proofs have been done to figu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o see the basic knowledge of security industry.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wo question sheets to search real data and actual proofs, with making targets of pure security organization and personnel. The one consists of 9 questions to find the scale and extent of security organizations and the population and character of security personnel, and the other 25 questions in 3 major areas to analyze the causes, the frequency rates, the factors, and the condition of accidents. The period of survey was July 15th to October 15th in 1997 by mail/telephone/interview. The questionnaires were efficiently returned from 102 differ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public security groups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Bureau and so on, with the information of 8,222 persons having worked for Korean Security Industry in 1996. So being based on the reality, some meaningful facts were found, and were compared with the national statistic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is made up of 5 chapters : in the 1st chapter the motivation, the object, the method, the direc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approach were presented ; in the 2nd chapt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were inferred ; in the 3rd chapter the collected data of accidents in Korean Security Industry were analyzed and explained on the base of the questionnaires ; in the 4th chapter the advisable facts connected with preventing accidents were mentioned ; in the last the conclusion were stated. With the replies of 102 differ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formation of 8,222 persons in 1996, the main facts found or analyz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ccident is an unpredictable and occasional event. It occurs to man and/or thing, but the frequency rate of accidents in Korean Government and other Institutes has been calculated and evaluated only in the point of the accident related with man.

Secondly, the factors of accidents are firstly relevant to the way preventing accidents in Security Industry in Korea. However the frequency rate is academically calculated and evaluated by at once man(population) and hour(time). But the Government has done the rate only by man(population). This can be improper and inaccurate rates.

Thirdly, the confused concept of security is used in Korean Government, academic society, corporation and so on. Therefore the detailed formation of the concept i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in Korea.

Fourthly, security organiz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public security(public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urity' according to its identification, and furthermore 'private security' can be divided into 'facilities-guard service', 'body-guard service', and 'patrol service' according to its major role.

Fifthly, in the viewpoint of the number of both organization and population, 'facilities-guard service' is centered in Korean 'private security'.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in this study, the frequency rate of accidents of Korean Security Industry is 0.43(%) totally in 1996 : 'facilities-guard service' 0.54(%), 'body-guard service' 0.12(%), and 'patrol service' 0.21(%) in 'private security', and 'public security' 0.20(%). With regard to the accident frequency rate of organization and population, 'facilities-guard service' is the highest. The accident frequency rate of population in 'facilities-guard service' organization ranges dispersively from 0.20(%) to 11.11(%).

Sixthly, the accidented rate of workers having serviced for under one year is 57.6(%). This can mean that the main factor of accidents in Korean Security Industry is the lack of role-understanding and training/education. And another factor can be found on the time of accident occurrence. Many accidents have been occurred on the relaxed points like as just after lunch and morning rush-hour.

Lastly, the major advisable facts related to preventing accidents are as follows :

The workers who are over fifty years old in 'facilities-guard service' organization need to be educated for preventing accidents ; It is desirable that the training and education to prevent accidents should be practiced in the time of pre-service ; As the style of accidents and the age of the accidented are not same according to major service area('public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 'facilities-guard service', 'body-guard service', and 'patrol service'), the plans to prevent accidents must be different and various. However fracture and bruise are general accidents in Korean Security Industry ; Workers must care about traffic accident and violent fall ; It seems that the grouped working with other two persons will reduce accident occurrence possibility rather than individually single working.